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91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김선교·김성원·박덕흠

김위상 · 송석준 · 구자근

김예지 · 최수진 · 최보윤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 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 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가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 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대차) 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할 수 없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6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u>한국농어</u>	<u>농업경영을</u>		
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		
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상사용하게 하는 경우(한국농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		
<u>는 경우</u>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